

2026년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협업체 모집공고

초보-선도(성장)기업 간 협업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성공 견인 및 공동마케팅을 통한 제주상품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2026년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대상 : 도내 수출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2026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at) 등 유사사업 참여업체는 선정제외

지원내용 : 협업체 공동 온·오프라인 해외판촉행사 비용의 80% 지원

※아래에서 하나의 지원분야만 선택(세부 지원내용은 복수 선택 가능)

지원 분야	내 용
① 오프라인 판촉행사	· 체험·시식행사 등 해외 유통매장 등 연계 공동판매전 - 임차비, 장치비, 행사비(시식비, 판촉요원비 등), 홍보비 등
② 온라인 판촉전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연계 판촉마케팅 - 마케팅비(이벤트쿠폰, 증정품, 배송료 등), 기타 홍보비 등
③ 기 타	· 제주상품 해외 판촉을 위한 협업마케팅으로 인정 가능한 분야

* 세 개의 지원분야 중 하나만 선택 / 업체 출장비, 온라인쇼핑몰 입점비는 지원 제외

지원규모 : 4개 협업체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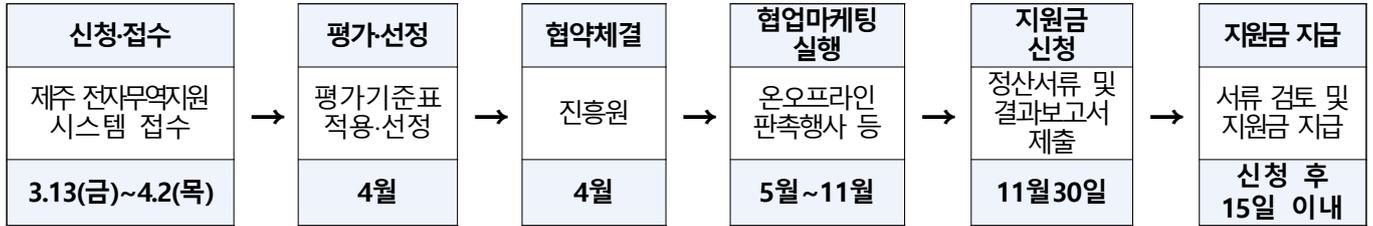
지원한도 : 협업체 별 최대 21,000천원

※ 모집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모집기간 : 2026. 03. 13(금) ~ 04. 02(목)까지 접수

2 추진절차 및 협업체 구성 및 자격요건

□ 추진절차



□ 협업체의 구성 및 자격요건

- 협업체 구성 : 추진기업* 중심으로 3개사 이상 참여
 - *추진기업 :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협업체의 대표기업 (예시:추진기업1+참여기업2)
- 협업체 참여자격(하기 세 가지 사항 모두 충족)
 -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희망)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수출역량진단 참여업체로 구성
 - 현지 유통매장 또는 온라인쇼핑몰 등과 연계하여 기간 내 판촉행사(또는 기타 판촉마케팅 추진) 가능한 수출기업
- 신청제외 및 사업참여 제한대상
 - 비영리단체
 - 2026년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at) 등 유사사업 참여업체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국세 및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일정 수출규모이상 기업(연간 1,000만달러 이상), 유통업체(도외제품) 및 도 출자·출연기업(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 참가업체 선정

- 신청방법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 선정방법 : (1차) 서류검토 (2차) 평가위원 구성 후 발표평가
 - 서류평가 : 자격요건, 신청제외 대상여부, 사업계획 작성 불성실 등 결격사유 검토 후 발표평가 대상 선정
 - 발표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취득한 협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심사 분야	항 목
협업체 수출액 총액	▸ '25년도 수출액 총액
협업체 매출액 총액	▸ '25년도 매출액 총액
계획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참신성(행사국가, 품목, 운영방향 등)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사업비 사용계획의 세분화 여부, 자부담 등)
협업의 효과성	▸ 시너지효과 유발할 수 있는 업체(상품)들로 구성
협업의 지속성	▸ 협업기업 간 추진체계, 지속가능성 등
파급효과	▸ 판촉행사의 향후 파급효과(기대효과)

○ 기타 : 선정 협업체 포기 시, 차상위 협업체 선정

※ 차상위 협업체도 없을 경우 도와 협의 후 진흥원 직접 협업사업 추진 가능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모집기간 : 2026.03.12.(목) ~ 2026.04.02.(목)까지 접수

○ 접수방법 ※ 전자무역시스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무역시스템(<http://www.jejutrade.or.kr/index.htm>) 로그인 후

수출지원사업 → 사업참가신청 → 2026년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하기 → 첨부파일(신청 구비 서류 - 각 서류 전부를 1개의 ZIP) 첨부 → 확인

○ 첨부파일

<붙임>

1. (서식1,2) 신청서, 계획서

2. (서식3) 참가기업 협약서

3. (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치동의서

<필수제출>

4. 각 업체별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5. 각 업체별 직·간접 수출 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분, 간접수출증명원 등)

6. 각 업체별 역량진단평가표

7. 사업계획서(프레젠테이션, 자율양식) ※ 발표자료

※ 붙임2의 사업계획서 기초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
(사업계획 및 목적, 제작매체 및 방법, 홍보 및 활용 방법 등)

- 접수방법
 - 불임파일 작성 및 필수제출 파일 전부구비후 각 서류 전부를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전자무역지원시스템에 업로드
 - ☞ 제출(첨부)파일 : 000협동조합.ZIP ※1개파일로 업로드

4 문의처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 064-710-2629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 064-805-3385
- 주소 : 제주시 연삼로 473, 4층 판로지원처 통상물류팀

5 기타사항

-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후에 포기하여 신청업체에 피해를 준 경우 차년도 지원사업 선정 제외
- 참여기업은 25년 제주수출지원사업 성과 및 만족도조사(7월 예정)에 필수 참여해야함(25년 도 수출지원사업 참여이력이 없을 경우 조사참여제외)
- 지원사업을 포기 해야 하는 경우 : 추진업체가 변경 될 경우, 추진업체 중심으로 3개사 미만으로 참여 하는 경우
- 선정된 업체가 본 지원사업 포기시 차순위 업체 선정 가능
- 선정된 이후에 참여기업 수가 감소 할 경우 추진기업은 신청서에 제출한 협업체 수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함 (단, 참여업체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무관함)
- 지원금 정산 시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 취소
- 선정 협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함
- 사전변경승인 없이 사업 주요내용 변경 및 주요사항 변경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허위,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 함(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 서류의 기재착오, 연락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출자 책임으로 함
-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6 해외 판촉행사 세부 정산기준

□ 기본사항

- 모든 사업비용은 해외 판촉 행사 관련 실제 집행비용에 한함
- 환율은 송금 시 환율 적용, 단 환율 적용이 분명치 않은 경우 진흥원 정산서류 제출일 KEB 하나은행 최초고시율(매매기준율) 기준 적용
- 항목별 지원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진흥원과 협의 필요
 - * 각국 세무 당국이 인정하는 영수증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확정 증빙 첨부 불가 시, 사전 경제통상진흥원과 협의 필요

□ 지원내용

항목	항목	세부내용
오프라인 판촉행사	임차 장치비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임차 및 설치비용(임차비, 입점 수수료 등)
	행사비	홍보요원 고용, 시식품비, 시식관련 소모품비 등
	홍보비	판촉행사 및 제품홍보 관련 비용(이벤트 용역, 미디어 매체 제작·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 홍보 등)
온라인 판촉전	홍보비	해외 온라인 쇼핑몰 연계 판촉마케팅 (이벤트쿠폰, 증정품, 배송료, SNS 홍보 등), 기타 홍보비
기 타	홍보비	제주상품 해외 판촉을 위한 협업마케팅으로 인정한 분야 ※ 선정 시 협약을 통해 인정 가능한 부분 명시 및 사전 협의

* 현지 특성 상 상기 외 비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제통상진흥원과 사전협의

□ 지원 세부 기준

지원항목	세부내역	제출서류
입점 관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촉행사장 임차비 및 입점수수료 - 품목등록비, 점포Listing Fee 이외 단순 매출수수료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업체(매장) 발행 증빙서 또는 임차 계약서(금액표시) ○ 식품중개 활동 내역 납품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장차 관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촉관련 시식대,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제작 설치비 및 임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증빙서 및 실물 사진
시식 행사 관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관련 홍보·판촉요원 고용관련 비용 (통역포함) * 국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로 신분증,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징구 애로 시 해당국가의 제출 가능한 증빙으로 대체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고용업체 활용 시, 업체 발행 증빙서류 - 판촉요원 이름, 근무매장, 근무일수, 지급액 등 * 인력업체 활용 시 신분증, 개인별 활동사진 생략가능 ○ 주관업체 직접고용 시 판촉요원 개인별 대금수령증 - 근무매장, 근무일수, 지급액, 근무자 서명 날인 - 판촉요원 명단 및 개인별 활동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식용 식품 및 테스트용 화장품, 증정품 (1+1 등)은 총 지원액의 20% 한도 ○ 시식용, 테스트용, 증정품 인정 단가: 수출단가의 4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식용, 테스트용, 증정품 증빙은 행사 기간 안에 품목별 수출신고필증 및 간접수출실적증명서(구매확인서) 제출 ○ 행사매장 시식행사 사진 첨부
홍보 관련 비용 (오프라인· 온라인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제작 및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 온라인 시식 등 판촉 관련 행사 및 제품 홍보에 집행된 비용 ○ 포인트+쿠폰, 배송료(온라인 시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내역 및 송금증 등 관련 증빙 ○ 제작실물 또는 실물사진 ○ 증정품 관리대장(수량명시), 사진 첨부 * 경품행사 진행시 사전에 행사계획 제출 및 협의 필요 ○ 포인트, 쿠폰 등 마케팅 내역 및 관련 증빙

- * 지원항목 세부기준은 판촉행사 현지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진흥원 협의가 필요함
- * 영수증의 수신자가 보조사업자와 상이한 경우 어떤 관계인지 결과보고서에 명기

[붙임 2]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진행하므로 성실히 작성 요망

1. 기업소개

※ 협업체 설립배경 및 각 협업기업의 대표상품 소개

2. 사업목적 및 계획

- ※ 본 사업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및 사업 목적 등
- ※ 형식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작성. (공고문 내용 중 “심사분야 및 항목” 참조)
- ※ 예:) 대상국가, 협업 기업간의 추진전략 및 지속가능성, 마케팅 방식, 목표(매출), 수출에 대한 의지,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성, 참신성 등

3. 사업예산 사용계획 및 자부담계획

※ 형식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작성. (공고문 내용 중 “심사분야 및 항목” 참조)

4. 지원효과

※ 본사업을 통한 기대효과(성과목표),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향후 파급효과 등

※ 본 페이지 포함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바랍니다.

-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협업체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참 여 약 약 서

본 협업 구성원은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내용에 대해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향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다음연도 진흥원 지원사업 제외 등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처분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다 음 >

1. 본 협업 구성원은 사업 추진기간 중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마케팅실적 및 사후 추진상황 제출요청, 설문조사 등에 최대한 성실히 응합니다.(사후 진행상황 제출은 의무사항임)
2. 해당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므로,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3. 본 협업 구성원은 사업 선정 후 지정된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4. 본 협업 구성원은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신청자격을 충족 및 신청제외 대상이 아님을 확약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규정하는 하기의 불성실 내용을 숙지함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협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붙임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제주수출기업 협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활용동의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2026년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됨.
- 「2026년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 수행 관리를 목적으로 이용됨.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마케팅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홍보에 이용됨.
- 중소기업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개업년월일, 법인등록년월일, 업태, 업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팩스번호, 수출규모, 매출규모 등 참가신청서 및 신청서류에 기재된 정보 전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2026년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가신청을 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위에 대한 동의가 없이는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대표자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중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중